## KOSHA GUIDE

C - 109 - 2017

- (바) "정기보수(Turn Around, Overhaul)"라 함은 정기적으로 단위공장의 가동을 중단(shutdown)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말한다.
- (사) "일반보수(유지보수)"라 함은 해당 공정의 정비, 수리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.
- (아) "긴급보수"라 함은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 시 단시간에 완료되어야 하는 수리작업을 말한다.
- (자) "발주자"라 함은 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로서 플랜트 개·보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.
- (차) "도급업체"라 함은 플랜트 개·보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.
- (카) "하도급"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- (타) "안전작업허가서"라 함은 발주자가 현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적 으로 작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.
- (파) "맹판"이라 함은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 요소로서 플랜지 사이,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하는 금속판을 말하며, 그 종류중 일부는 <그림 1~3>과 같다.



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